

제목 : 2023년 위생사 정오표

**필기 - (4,6판)**

p757

5장 위생관계법

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

[시행 2023. 8. 31.] [질병관리청고시 제2023-8호, 2023. 8. 31., 일부개정.]

질병관리청(감염병정책총괄과), 043-719-7136

1.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.

가. **엠펙스(MPOX)**

※ 2023. 8. 31 개정 : “**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**”는 제2급 감염병에서 **제4급 감염병**으로 개정되었음.

2.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.

가. **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**..... <제4급 감염병>

3.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6호에 따른 기생충감염병의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.

가. 회충증 나. 편충증 다. 요충증 라. 간흡충증 마. 폐흡충증 바. 장흡충증

사.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

4.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8호에 따른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의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.

가. 두창 나. 폴리오

다. 신종인플루엔자 라.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(SARS)

마. 콜레라 바. 페럼형 페스트 사. 황열

아. 바이러스성 출혈열 자. 웨스트나일열

5.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9호에 따른 생물테러감염병의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.

가. 탄저 나. 보툴리눔독소증

다. 페스트

라. 마버그열 마. 에볼라열 바. 라싸열

사. 두창 아. 야토병

